제418회국회(정기회)
제7차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박수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3391호)

2024.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정은

목 차

Ⅰ. 개요 ····· 1

Ⅱ. 주요 내용별 검토 ····· 3

1.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미래형 운송수단 추가 등 ····· 3

Ⅰ. 개요

1. 박수민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3391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박수민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8. 29.

(3) 회 부 일 : 2024. 8. 30.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미래의 교통수단은 전통적인 기존의 교통과 다르게 IT기술 및 통신기술과 접목되어 첨단화, 고급화될 것으로 전망됨. 모빌리티 분야의 기술혁신은 빠르게 진전되고 있으며, 인간이 인지할 수 있는 물리적 시·공간의 범위가 확장되고 있고, 용량증대, 환경개선, 에너지 절감, 편의성 증대, 안정성 확보, 인프라 확충 등 기술개발 환경의 여건에 영향을 받아서 다양한 교통수단에 대한 모델과 개념이 등장하고 있음.

미래 이동수단(Mobility)은 개인의 육상 이동 수단인 자동차 뿐 아니라, 개인용 비행체(PAV), 도심항공이동수단(UAM)과 친환경·초고속 운송수단인 수소 트럭, 하이퍼루프, 친환경·자율운항 선박 등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고 정보통신 기술을 통해 초연결을 실현하는 육상·해상·항공 교통 및 물류 이동 수단의 총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음.

그리고 미래형 이동수단과 운송수단은 산업간의 융합 및 상호간에 공통의 기술 기반을 바탕으로 한 융복합적 기술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상호 연관성이 매우 높음.

이러한 모빌리티 분야의 급속한 환경변화 속에서 최근 세계 주요국들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초연결, 초지능화를 기반으로 제조 및 서비스 기술과 산업의 빠른 융복합 촉진을 위한 미래 이동 수단 및 운송수단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특히 조선업의 경우 중국은 친환경 등 미래 선박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우리나라의 조선업이 강력한 도전을 받고 있는 실정임.

우리나라의 경우도 지난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미래형 이동수단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여 투자를 지원하고 있으나, 그 지원대상 기술이 개인 육상 이동 수단인 자동차에 한정되어 있음.

이에 다양한 모빌리티 산업 간의 융합, 모빌리티 기술의 공유 및 기술개발 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의 모빌리티 관련 국가전략기술으로 규정되어 있는 '미래형 이동수단'의 범위에 육상·해상·항공 등 다양한 모빌리티 수단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여 이에 대한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 및 시설투자금액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및 제24조제1항제2호 가목 등).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미래형 운송수단 추가 등

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 개요

□ 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이하 “R&D 세액공제”)는 ① 일반 R&D 세액공제와 ②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③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로 구분되어 있음.

일반 R&D 세액공제는 기업이 ‘당기분 방식’과 ‘증가분 방식’ 중 유리한 계산방식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음.

‘당기분 방식’은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R&D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며, 기업규모에 따라 대기업은 0~2%, 중견기업은 8~15%, 중소기업은 2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함. ‘증가분 방식’은 직전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R&D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고, 대기업은 25%, 중견기업은 40%, 중소기업은 5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함.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와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는 ‘당기분 방식’이 적용되는데, 미래 유망성 및 산업 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신성장·원천기술[1]은 대

---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1항 본문 생략)
1. 연구・인력개발비 중 미래 유망성 및 산업 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하 “신성장・원천기술”이라 한다)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가목의 비율과 나목의 비율을 더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기업 및 중견기업에 대해 연구개발비의 20~30%를 공제하고, 중소기업은 연구개발비의 30~40%를 공제하며, 코스닥상장중견기업에 대해서는 25~40%를 공제함.

국가전략기술은 국가경제안보 목적상 중요하고 산업파급효과가 큰 기술[2]로서 신성장·원천기술 대비 공제율이 10%p 높은 수준이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R&D 비용의 30~40%를 공제받고, 중소기업은 40~50%를 공제받음.

[R&D 세액공제 유형별 공제율]

(단위: %)

구 분	기본			추가 [1]
	대	중견	중소	
일반 (당기분 방식)	최대 2	8~15 [2]	25	-
신성장·원천기술	20		30	최대 10
국가전략기술	30		40	최대 10

주 1) 추가분: 최대 10%(R&D 지출액 / 매출액 × 3)
2) (중소기업 졸업 후 ~3년)15%, (중소기업 졸업 후 4~5년)10%, (중소기업 졸업 후 6년~)8%

법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는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2020년 세법개정을 통해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특정시설투자세액공제 등 기존 10개의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통합·재설계하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1항 본문, 제1호 생략)
2. 연구・인력개발비 중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바이오의약품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와 관련된 기술로서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하 "국가전략기술"이라 한다)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에 가목의 비율과 나목의 비율을 더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여 신설되었음.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전후 비교]

종 전		<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
① R&D 설비(1/3/7) ② 생산성 향상 시설(1/3/7)* * 단, 대기업은 '20년 2%, 중견·중소기업은 '20~'21년까지 5%, 10% 적용 ③ 안전 설비(1/5/10) ④ 에너지절약 시설(1/3/7) ⑤ 환경보전 시설(3/5/10) ⑥ 초연결(5G) 네트워크 시설(최대 3) ⑦ 의약품 품질관리 시설(1/3/6) ⑧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5/7/10) ⑨ 근로자 복지증진 시설(3/5/10) ⑩ 중소·중견기업 투자세액공제(0/2/3) ※ 괄호: 대/중견/중소기업 공제율(%)	⇒	(공제대상)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 * 단, 토지와 건축물 등 제외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적용업종에서 소비성서비스업과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은 제외되며, 세액공제 대상은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인데 토지와 건축물 등은 제외됨. 또한, 중고품 및 리스에 의한 투자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세액공제액은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기본공제 금액'과 직전 3년 평균 투자액을 초과하는 투자액에 대한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임. '추가공제 금액'은 '기본공제 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제됨.

일반 시설투자에 대해서는 기본공제율이 대기업 1%·중견기업 5%·중소기업 10%이며, 신성장·원천기술사업화시설에 대한 기본공제율은 대기업 3%·중견기업 6%·중소기업 12%,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대한 기본공제율은 대기업 15%·중견기업 15%·중소기업 25%임.

일반 시설투자 및 신성장·원천기술사업화시설에 대한 추가공제율은 3%이고,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대한 추가공제율은 4%임.

[통합투자세액공제 유형별 공제율]

(단위: %)

구 분	기본공제			추가공제 주)
	대	중견	중소	
일 반	1	5	10	3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	3	6	12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15		25	4

주) 추가분=당해연도 투자액 - 직전 3년 평균 투자액

한편, 그동안 신성장·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었으나,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는 2023년 4월 법률에서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와 관련된 기술'로 직접 명시하는 것으로 개정되었고, 이후 바이오의약품이 추가되었음.

[신성장·원천기술 분야 기술 현황]

구분	분야	기술
미래형자동차	자율 주행차	자율주행 기록 및 사고원인 규명 기술, 탑승자 인지 및 인터페이스 기술 등
	전기 구동차	전기차 초고속·고효율 무선충전 기술, 하이브리드자동차의 구동시스템 고효율화 기술 등
지능정보	인공지능	학습 및 추론 기술, , 언어이해 기술 등
	사물인터넷 (IoT: Internet of Things)	IoT 네트워크 기술, IoT 플랫폼 기술 등
	클라우드(Cloud)	SaaS(Software as a Service) 기술, PaaS(Platform as a Service) 기술 등
	빅데이터(Big Data)	빅데이터 수집·정제·저장 및 처리기술, 빅데이터 분석 및 예측 기술 등
	착용형 스마트기기	신체 부착형 전자회로의 유연기판 제작기술 및 유연회로 인쇄기술, 유연한 양·음극 소재 및 전극 설계·제조기술 등
	IT 융합	지능형 전자항해 기술 등
	블록체인	블록체인 기술 등
	양자컴퓨터	양자컴퓨터 제작 및 활용 기술 등
	스마트 물류	지능형 콜드체인 모니터링 기술 등
차세대소프트웨어 (SW) 및 보안	기반 소프트웨어(SW)	융합서비스·제품의 소프트웨어 내재화 기술 등
	융합보안	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Intelligence) 대응기술 등
콘텐츠	실감형 콘텐츠	가상현실(VR) 콘텐츠 기술 등
	문화콘텐츠	게임 콘텐츠 제작기술 등
차세대전자정보 디바이스	지능형 반도체·센서	고속 컴퓨팅을 위한 SoC 설계·제조 기술 등
	반도체 등 소재·부품	포토레지스트(Photoresist) 개발 및 제조기술 등
	유기발광 다이오드(OLED) 등 고기능 디스플레이	9인치 이상 능동형 유기발광 다이오드(AMOLED: Active Matrix Organic Light Emitting Diode) 패널 기능개선 및 부품·소재·장비 제조 기술 등
	3D프린팅	3D프린팅 소재·장비 개발 및 제조기술 등
	AR 디바이스	AR 디바이스 제조기술 등
차세대 방송통신	5세대(5G) 및 6세대 (6G)이동통신	5G 이동통신 기지국 장비 기술 등
	UHD (Ultra-High Definition)	지상파 UHD방송 송신기 성능 향상기술 등
바이오·헬스	바이오·화합물의약	방어 항원 스크리닝 및 제조기술 등
	의료기기·헬스케어	기능 융합형 초음파 영상기술 등
	바이오 농수산·식품	비가열 및 고온·고압 전처리 기술 등
	바이오 화학	바이오매스 유래 바이오플라스틱 생산 기술 등
에너지·환경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 Energy Storage System)	비리튬계 이차전지 소재 등 설계 및 제조기술 등
	발전시스템	대형가스터빈 부품 및 시스템 설계·제작·조립·시험 평가기술 등
	원자력	원자로 냉각재 펌프 설계 기술 등
	오염방지·자원순환	미세먼지 제거 및 고정밀 미세먼지·온실가스 동시 측정 기술 등

구분	분야	기술
융복합소재	고기능섬유	탄소섬유복합재의 가공장비 및 검사장비 설계·제조기술 등
	초경량 금속	고강도 마그네슘 부품의 온간성형기술 등
	하이퍼 플라스틱	인성특성이 향상된 고강성 하이퍼플라스틱(High Performance Plastics) 복합체 제조 및 가공 기술 등
	구리합금	고강도 구리합금 설계·제조기술 등
	특수강	고기능성 H형강 제품 제조기술 등
	기능성 탄성·접착소재	고기능 불소계 실리콘 제조·가공 기술 등
	희소금속·소재	타이타늄 소재 제조기술과 금속재료 부품화 기술 등
로봇	첨단제조 및 산업로봇	고청정 환경 대응 반도체 생산 로봇 기술 등
	안전로봇	감시경계용 서비스로봇을 위한 주변환경 센싱 기술, 실내외 전천후 위치인식 및 주행 기술 등
	의료 및 생활 로봇	수술, 진단 및 재활 로봇기술 등
	로봇공통	실내외 소음환경에서의 대화신호 추출 기술 등
항공·우주	무인이동체	무인기 지능형 자율비행 제어 시스템 기술 등
	우주	위성본체 부분품 개발기술 등
첨단 소재·부품·장비	첨단 소재	고기능성 알루미늄 도금강판 제조 기술 등
	첨단 부품	고정밀 롤러베어링 및 볼베어링 설계·제조 기술 등
	첨단 장비	첨단 머시닝센터 설계·제조기술 등
탄소중립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연소 후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 등
	수소	부생수소 생산기술 등
	신재생에너지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지지형셀·스택·시스템 설계 및 제조 기술 등
	산업공정	함수소가스 활용 고로취입기술 등
	에너지효율·수송	지능형 전력계통(Smart Grid) 설계 및 제조기술 등
방위산업	방산장비	추진체계 기술 등
	전투지원	유무인복합체계 기술 등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 (2024. 2. 29. 개정)

[국가전략기술 분야 기술 현황]

분야	기술
반도체	첨단 메모리 반도체 설계·제조 기술
	차세대 메모리반도체(STT-MRAM, PRAM, ReRAM, PIM, HBM, LLC, CXL, SOM) 설계·제조기술
	고속 컴퓨팅을 위한 SoC 설계 및 제조(7nm이하) 기술tem on Chip) 설계 및 제조(7nm 이하) 기술
	차세대 디지털기기 SoC 설계·제조기술
	고성능 마이크로 센서의 설계·제조·패키징 기술
	차량용 반도체 설계·제조기술
	에너지효율향상 반도체 설계·제조 기술
	에너지효율향상 전력반도체(BCDMOS, UHV, 고전압 아날로그IC) 설계·제조기술(0.35㎛이하)
	차세대 디지털기기·차량용 디스플레이 반도체 설계·제조기술

분야	기술
	SoC 반도체 개발·양산 위한 파운드리 분야 7nm 이하급 제조공정 및 공정 설계기술
	WLP, PLP, SiP, 플립칩 기술 등을 활용한 2D/2.5D/3D 패키징 공정기술 및 패키징 관련 소재·부품·장비설계·제조기술
	반도체용 실리콘 기판 및 화합물 기판 개발 및 제조기술
	첨단 메모리반도체 및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SoC 반도체 파운드리 소재·장비·장비부품 설계·제조기술
	포토레지스트(Photoresist) 개발 및 제조기술
	원자층증착법 및 화학증착법을 위한 고유전체용 전구체 개발 기술
	고순도 불화수소 개발 및 제조기술
	블랭크 마스크 개발 및 제조기술
	고기능성 인산 제조 기술
	고순도 석영(쿼츠) 도가니 제조 기술
	코트막형성재 개발 및 제조기술
	파운드리향 IP 설계 및 검증 기술
	고성능·고효율 시스템 반도체의 테스트 기술 및 테스트 관련 장비, 부품 설계·제조기술
이차전지	고에너지밀도 이차전지 팩 제조기술
	고성능 리튬이차전지 부품·소재·셀 및 모듈 제조 기술
	사용후 배터리 평가 및 선별 기술
	사용후배터리 재활용 기술
	차세대 리튬이차전지 부품·소재·셀 및 모듈 제조 기술
	하이니켈 양극재 제조기술
	장수명 음극재 제조기술
	이차전지 분리막 및 전해액 제조기술
	이차전지 부품 제조기술
백신	방어 항원 등 스크리닝 및 제조기술
	비임상 시험 기술
	임상약리시험 평가기술(임상 1상 시험)
	치료적 탐색 임상평가기술(임상2상 시험)
	치료적 확증 임상평가기술(임상3상 시험)
	원료 및 원부자재 등 개발·제조 기술
	생산장비 개발·제조 기술
디스플레이	AMOLED 패널 설계·제조·공정·모듈·구동 기술
	친환경 QD(Quantum Dot) 소재 적용 디스플레이 패널 설계·제조·공정·모듈·구동 기술
	Micro LED 디스플레이 패널 설계·제조·공정·모듈·구동 기술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용 증착·코팅 소재 기술
	디스플레이 TFT 형성 장비 및 부품 기술:
	OLED 화소 형성·봉지 공정 장비 및 부품 기술
수소	수전해 기반 청정수소 생산기술
	탄소포집 청정수소 생산기술

분야	기술
	수소연료 저장·공급 장치 제조기술
	수소충전소의 수소 생산·압축·저장·충전 설비 부품 제조기술
	수소차용 고밀도 고효율 연료전지시스템 기술
	연료전지 전용부품 제조기술
	수소 가스터빈(혼소·전소) 설계 및 제작 기술
	수소환원제철 기술
	수소 저장 효율화 기술
미래형 이동수단	주행상황 인지 센서 기술
	주행지능정보처리 통합시스템 기술
	주행상황 인지 기반 통합제어 시스템 기술
	전기동력 자동차의 구동시스템 고효율화 기술
	전기동력 자동차의 전력변환 및 충전 시스템 기술
바이오 의약품	바이오 신약[바이오 베터(Bio Better)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후보물질 발굴 및 바이오 신약 제조 기술
	바이오시밀러 제조 및 개량 기술
	비임상 시험 기술
	임상약리시험 평가기술(임상1상 시험)
	치료적 탐색 임상평가기술(임상2상 시험)
	치료적 확증 임상평가기술(임상3상 시험)
	바이오의약품 원료·소재 제조기술
	바이오의약품 부품·장비 설계·제조기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의2 (2024. 2. 29. 개정)

R&D 세액공제에 따른 조세지출은 2020년 2조 7,340억원에서 2023년 4조 6,302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2025년에는 3조 990억원으로 예상되고 있음.

[R&D 세액공제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소득세	910	954	1,057	1,081	1,013	1,080
법인세	26,430	26,342	36,173	45,221	28,562	29,910
합 계	27,340	27,296	37,231	46,302	29,575	30,990

주: 2024, 2025년도는 전망치임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통합투자세액공제 조세지출은 2020년 6,226억원에서 2023년 2조 799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대기업 실적회복으로 2025년에는 4조 2,883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통합투자세액공제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소득세	217	491	810	1,036	1,269	1,295
법인세	6,009	12,969	21,187	19,764	16,134	41,590
합 계	6,226	13,459	21,997	20,799	17,402	42,883

주: 2024, 2025년도는 전망치임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2023년 법인세 R&D 세액공제 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중소기업 41,660개가 1조 5,150억 1,800만원을 신고했고, 일반법인 1,718개가 3조 70억 4,000만원을 신고했음.

[2023년 법인세 R&D 세액공제 신고 현황]

(단위: 개, 백만원)

수입금액 규모	중소기업		일반법인	
	신고 법인수	금액	신고 법인수	금액
10억원 이하	4,370	26,931	1	11
20억원 이하	6,119	56,352	4	36
50억원 이하	11,814	203,843	17	536
100억원 이하	8,470	254,558	32	1,665
200억원 이하	5,506	278,567	57	2,980
300억원 이하	2,090	160,621	44	2,761
500억원 이하	1,797	198,988	93	7,155
1,000억원 이하	1,169	229,272	171	26,106
5,000억원 이하	324	102,498	872	319,207
5,000억원 초과	1	3,388	427	2,646,583
합계	41,660	1,515,018	1,718	3,007,040

자료: 국세통계포털

2023년 법인세 통합투자세액공제 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중소기업 8,926개가 4,013억원을 신고했고, 일반법인 1,752개가 1조 3,789억 200만원을 신고했음.

[2023년 법인세 통합투자세액공제 신고 현황]

(단위: 개, 백만원)

수입금액 규모	중소기업		일반법인	
	신고 법인수	금액	신고 법인수	금액
10억원 이하	1,063	2,172	2	104
20억원 이하	874	3,752	2	84
50억원 이하	1,744	16,690	9	80
100억원 이하	1,392	28,987	22	240
200억원 이하	1,520	59,975	76	2,187
300억원 이하	789	48,214	52	2,327
500억원 이하	757	70,227	98	3,921
1,000억원 이하	610	102,277	219	12,769
5,000억원 이하	u	56,247	833	138,317
5,000억원 초과	u	12,759	439	1,218,875
합계	8,926	401,300	1,752	1,378,902

자료: 국세통계포털

나.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R&D 공제율 상향과 적용기한 연장(황정아의원안, 박수영의원안, 최은석의원안, 정성호의원안, 박성훈의원안, 박수민의원안, 김종양의원안, 윤준병의원안, 김영진의원안, 김정재의원안, 김태년의원안, 이병진의원안, 정부안, 최민희의원안, 박지혜의원안, 허성무의원안, 안도걸의원안, 천하람의원안, 신영대의원안, 정태호의원안)

<table>
<tr><th>현 행</th><th>개정안</th></tr>
<tr><td>
□ R&D 세액공제(제10조)
○ 유형별 공제율
<table>
<tr><th rowspan="2">구 분(%)</th><th colspan="3">기본</th><th rowspan="2">추가[1)]</th></tr>
<tr><th>대</th><th>중견</th><th>중소</th></tr>
<tr><td>일 반</td><td colspan="2">최대 28～15[2)]</td><td>25</td><td>-</td></tr>
<tr><td>신성장·원천기술*</td><td colspan="2">20</td><td>30</td><td>최대 10</td></tr>
<tr><td>국가전략기술</td><td colspan="2">30</td><td>40</td><td>최대 10</td></tr>
</table>
1」 추가분: 최대 10%(R&D 지출액 / 매출액 × 3)
2」 (～3년)15%, (4～5년)10%, (6년～)8%
* 코스닥상장중견기업의 경우: 25～40%

○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적용기한: 2024.12.31.
</td><td>
□ R&D 세액공제(제10조)
○ 유형별 공제율
- 신성장·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 공제율 상향 (황정아의원안)
<table>
<tr><th rowspan="2">구 분(%)</th><th colspan="3">기본</th><th rowspan="2">추가</th></tr>
<tr><th>대</th><th>중견</th><th>중소</th></tr>
<tr><td>일 반</td><td colspan="2">최대 28～15</td><td>25</td><td>-</td></tr>
<tr><td>신성장·원천기술*</td><td colspan="2">30</td><td>50</td><td>최대 10</td></tr>
<tr><td>국가전략기술</td><td colspan="2">40</td><td>60</td><td>최대 10</td></tr>
</table>
* 코스닥상장중견기업의 경우: 35～50%
- 국가전략기술 공제율 상향 (박수영의원안)
<table>
<tr><th rowspan="2">구 분(%)</th><th colspan="3">기본</th><th rowspan="2">추가</th></tr>
<tr><th>대</th><th>중견</th><th>중소</th></tr>
<tr><td>일 반</td><td colspan="2">최대 28～15</td><td>25</td><td>-</td></tr>
<tr><td>신성장·원천기술*</td><td colspan="2">20</td><td>30</td><td>최대 10</td></tr>
<tr><td>국가전략기술</td><td colspan="2">40</td><td>50</td><td>최대 10</td></tr>
</table>
* 코스닥상장중견기업의 경우: 25～40%
○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적용기한 연장
- 2026.12.31. (최은석의원안, 천하람의원안)
</td></tr>
</table>

현 행	개정안
	- 2027.12.31. (황정아의원안, 정성호의원안, 박성훈의원안, 박수민의원안, 정부안, 최민희의원안, 허성무의원안, 안도걸의원안, 신영대의원안, 정태호의원안) - 2029.12.31. (김종양의원안, 윤준병의원안) - 2030.12.31. (김영진의원안) - 2034.12.31. (김정재의원안, 김태년의원안, 이병진의원안) - 국가전략기술 2028.12.31. (박지혜의원안) - 국가전략기술 2034.12.31. (박수영의원안)

* 김정재의원안 2024. 6. 13. 발의(의안번호 463), 김태년의원안 2024. 7. 3. 발의(의안번호 1361), 김종양의원안 2024. 7. 5. 발의(의안번호 1431), 황정아의원안 2024. 7. 8. 발의(의안번호 1450), 박수영의원안 2024. 7. 8. 발의(의안번호 1484), 김영진의원안 2024. 7. 9. 발의(의안번호 1526), 정성호의원안 2024. 7. 22. 발의(의안번호 2063), 이병진의원안 2024. 7. 23. 발의(의안번호 2125), 최은석의원안 2024. 7. 24. 발의(의안번호 2186), 박성훈의원안 2024. 8. 1. 발의(의안번호 2466), 윤준병의원안 2024. 8. 22. 발의(의안번호 3085), 박수민의원안 2024. 8. 29. 발의(의안번호 3391), 정부안 2024. 9. 2. 제출(의안번호 3522), 최민희의원안 2024. 9. 5. 발의(의안번호 3697), 박지혜의원안 2024. 9. 5. 발의(의안번호 3721), 허성무의원안 2024. 10. 22. 발의(의안번호 4825), 안도걸의원안 2024. 10. 25. 발의(의안번호 4923), 천하람의원안 2024. 10. 28. 발의(의안번호 4944), 신영대의원안 2024. 10. 28. 발의(의안번호 4983), 정태호의원안 2024. 10. 28. 발의(의안번호 4975)

□ 개정안은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R&D 공제율을 상향하고 적용기한(2024년)을 연장하여 주요 기술에 대한 R&D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신성장·원천기술 공제율과 관련하여, 황정아의원안은 공제율을 대·중견기업 30~40%, 코스닥상장중견기업 35~50%, 중소기업 50~60%로 10%p 상향하려는 것임.

국가전략기술 공제율과 관련하여, 박수영의원안은 공제율을 대·중

견기업 40~50%, 중소기업 50~60%로 상향하려는 것이고, 황정아의원안은 대·중견기업 40~50%, 중소기업 60~70%로 상향하려는 것임.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적용기한과 관련하여, 최은석의원안·천하람의원안은 2026년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이고, 황정아의원안·정성호의원안·박성훈의원안·박수민의원안·정부안·최민희의원안·허성무의원안·안도걸의원안·신영대의원안·정태호의원안은 2027년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이며, 김종양의원안·윤준병의원안은 2029년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이고, 김영진의원안은 2030년까지 6년 연장하려는 것이며, 김정재의원안·김태년의원안·이병진의원안은 2034년까지 10년 연장하려는 것임. 박지혜의원안은 국가전략기술의 적용기한만 2028년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이고, 박수영의원안은 국가전략기술의 적용기한만 2034년까지 10년 연장하려는 것임.

[적용기한 연장 관련 개정안 요약]

적용기한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2034년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 모두 연장	최은석의원안, 천하람의원안	황정아의원안, 정성호의원안, 박성훈의원안, 박수민의원안, 정부안, 최민희의원안, 허성무의원안, 안도걸의원안, 신영대의원안, 정태호의원안	-	김종양의원안, 윤준병의원안	김영진의원안	김정재의원안, 김태년의원안, 이병진의원안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만 연장	-	-	박지혜의원안	-	-	박수영의원안

□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될 수 있음.

첫째, 세액공제율 상향 및 적용기한 연장은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우리나라의 기술력을 강화하고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

과기부에서 선정한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이동수단 등 12대 국가전략기술[3] 분야 기업을 조사한 결과, R&D 세액공제 지원이 기술 성장성, 성공한 R&D 과제수, 최신특허 인용 등 혁신활동 및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4]

또한, 국가전략기술 분야 연구개발 기업의 조세 지원 관계자에 대한 인터뷰에 따르면 국가전략기술 R&D 기업은 일반적으로 R&D 세액공제를 통해 절감한 비용을 연구개발 활동 재투자에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음.[5]

신성장·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의 경우 기술개발의 불확실성이 상대적으로 더 크고, 외부효과도 더욱 크게 발생하므로 세제지원이 R&D를 촉진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음.

둘째, 주요국들이 주요기술에 대한 R&D 조세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세액공제율 상향 및 적용기한 연장은 우리나라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음.

---

3) 「조세특례제한법」 상 국가전략기술과 범위에 차이가 있음.

4) KISTEP, 「기업 혁신활동 제고를 위한 R&D 조세 지원 정책 연구 :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기업을 중심으로」, 2023. 5.

5) 소기업은 절감된 비용을 일반적으로 R&D 인력 충원에 활용하고, 중기업 이상 절감된 비용을 R&D 인력 충원과 R&D 설비 투자에 활용하였음.

예를 들어, 대만은 2023년에 '산업혁신 조례 수정안'을 통과시켜 기술혁신·세계 공급망에서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업체가 연구개발(R&D)에 투자할 경우 R&D 비용의 25%를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를 신설하였음.

[주요국 반도체 인센티브(투자대비 %)]

구 분		한국	대만	미국	일본
세액 공제	R&D	30~50	25	(증가분) 20	1~17
	투자	15~35	5	25	-
투자보조금		-	-	최대 15	33~50

자료: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2024. 6.)

□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신성장·원천기술의 경우 세액공제 제도가 연구개발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는 조사결과가 있어,[6] 동 제도가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 투자를 촉진하는 효과가 불확실한 측면이 있음.

둘째,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는 공제율 수준이 높고 신성장 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의 범위가 확장되고 있어 세수감소 규모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신성장·원천기술은 기술분야가 전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는데,

6) 조세재정연구원, 「2024 조세특례 심층평가(2):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2024. 9.

2017년 11개 분야·157개 기술에서 2024년 14개 분야·270개 기술로 늘어났고, 국가전략기술 역시 2022년 3개분야·36개 기술에서 2024년 7개 분야·66개 기술로 늘어나 세수감소 규모 증가에 영향을 미쳤음.

일반 기술의 경우, 2022년 조세지출액이 2018년 대비 1,305억원 증가(2조 1,553억원 → 2조 2,858억원)하였으나, 신성장·원천기술은 7,344억원 증가(1,447억원→8,791억원)하였고, 국가전략기술은 2022년 조세지출규모가 4,524억원에 달하여 조세지출 규모가 크게 늘어나는 추세임.

[R&D 세액공제 조세지출 추이]

구 분	2018	2022	증감
일반	2조 1,553억원	2조 2,858억원	1,305억원
신성장·원천기술	1,447억원	8,791억원	7,344억원
국가전략기술	-	4,524억원 (신설)	-

자료: 조세재정연구원, 「2024 조세특례 심층평가(2):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셋째,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감소 효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예산정책처는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현행 2024년 말에서 2034년 말로 10년 연장함에 따라 법인세가 2026년 2조 542억원, 2035년 2조 6,802억원 등 2026년부터 2035년까지 10년간 총 23조 5,486억원(연평균 2조 3,549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하고 있음.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기술별 재정수입 변화]

(단위: 억원)

연도	2026	2027	…	2034	2035
신성장·원천기술	-8,569	-8,826	…	-10,855	-11,181
국가전략기술	-11,972	-12,331	…	-15,166	-15,621

자료: 예산정책처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총 재정수입 변화]

(단위: 억원)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 10년 연장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542	-21,158	-21,793	-22,446	-23,120	-23,813
	2032	2033	2034	2035	누적	연평균
	-24,528	-25,264	-26,021	-26,802	-235,486	-23,549

자료: 예산정책처

넷째, 공제율 상향에 따른 세수감소 효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예산정책처는 황정아의원안에 대해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현행 2024년 말에서 2027년 말로 3년 연장하고, 기술유형별로 R&D 세액공제율을 10~20%p 상향함에 따라 법인세가 2026년 4조 5,329억원, 2030년 1조 7,432억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17조 4,462억원(연평균 3조 4,892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하고 있음.

또한, 예산정책처는 박수영의원안에 대해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현행 2024년 말에서 2034년 말로 10년 연장하고, 세액공제율을 현행 대비 10%p 상향함에 따라 법인세가 2026년 1조 6,253억원, 2035년 2조 1,206억원 등 2026년부터 2035년까지 총

18조 6,319억원(연평균 1조 8,632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하고 있음.

다섯째, 우리나라와 같이 기술 분야를 일반, 신성장 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등 3단계로 구분하여 지원하는 해외 주요국 사례는 없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현행 제도처럼 R&D 세액공제율을 기술 범주에 따라 차등화하는 등 구조를 복잡하게 유지하는 경우, 정부가 각 범주의 기술을 적절하게 선정하지 못하면 자원배분의 왜곡을 유발할 우려가 있음.

다. 신성장·원천기술사업화시설에 대한 공제율 상향과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대한 공제율 상향 및 적용기한 연장 (이상식의원안, 정성호의원안(1951), 이병진의원안(2125), 이병진의원안(2173), 정진욱의원안, 김상훈의원안, 박성훈의원안, 박수민의원안, 조지연의원안, 김종양의원안, 박충권의원안, 김영진의원안, 김성원의원안, 김태년의원안, 박수영의원안, 정부안, 박지혜의원안, 정성호의원안(4780), 허성무의원안, 천하람의원안, 정태호의원안, 신영대의원안)

<table>
<tr><th>현 행</th><th>개정안</th></tr>
<tr>
<td>
□ 통합투자세액공제(제24조)

○ 유형별 공제율
<table>
<tr><th rowspan="2">구 분(%)</th><th colspan="3">기본</th><th rowspan="2">추가*</th></tr>
<tr><th>대</th><th>중견</th><th>중소</th></tr>
<tr><td>일 반</td><td>1</td><td>5</td><td>10</td><td rowspan="2">3</td></tr>
<tr><td>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 시설</td><td>3</td><td>6</td><td>12</td></tr>
<tr><td>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td><td colspan="2">15</td><td>25</td><td>4</td></tr>
</table>
* (당해연도 투자액 – 직전 3년 평균 투자액)
</td>
<td>
□ 통합투자세액공제(제24조)

○ 유형별 공제율
–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추가공제율 상향 (이상식의원안, 정성호의원안(1951))
<table>
<tr><th rowspan="2">구 분(%)</th><th colspan="3">기본</th><th rowspan="2">추가</th></tr>
<tr><th>대</th><th>중견</th><th>중소</th></tr>
<tr><td>일 반</td><td>1</td><td>5</td><td>10</td><td rowspan="2">3</td></tr>
<tr><td>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 시설</td><td>3</td><td>6</td><td>12</td></tr>
<tr><td>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td><td colspan="2">15</td><td>25</td><td>10</td></tr>
</table>
–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기본공제율 상향 (박수영의원안)
<table>
<tr><th rowspan="2">구 분(%)</th><th colspan="3">기본</th><th rowspan="2">추가</th></tr>
<tr><th>대</th><th>중견</th><th>중소</th></tr>
<tr><td>일 반</td><td>1</td><td>5</td><td>10</td><td rowspan="2">3</td></tr>
<tr><td>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 시설</td><td>3</td><td>6</td><td>12</td></tr>
<tr><td>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td><td colspan="2">25</td><td>35</td><td>4</td></tr>
</table>
</td>
</tr>
</table>

<table>
<tr><th>현 행</th><th>개정안</th></tr>
<tr><td></td><td>-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기본공제율 상향 (이병진의원안(2173))
<table>
<tr><th rowspan="2">구 분(%)</th><th colspan="3">기본</th><th rowspan="2">추가</th></tr>
<tr><th>대</th><th>중견</th><th>중소</th></tr>
<tr><td>일 반</td><td>1</td><td>5</td><td>10</td><td rowspan="2">3</td></tr>
<tr><td>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 시설</td><td>3</td><td>6</td><td>12</td></tr>
<tr><td>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td><td colspan="2">30</td><td>40</td><td>4</td></tr>
</table>
- 신성장·원천기술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기본공제율 상향 (신영대의원안)
<table>
<tr><th rowspan="2">구 분(%)</th><th colspan="3">기본</th><th rowspan="2">추가</th></tr>
<tr><th>대</th><th>중견</th><th>중소</th></tr>
<tr><td>일 반</td><td>1</td><td>5</td><td>10</td><td rowspan="2">3</td></tr>
<tr><td>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 시설</td><td>15</td><td>20</td><td>25</td></tr>
<tr><td>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td><td colspan="2">25</td><td>30</td><td>4</td></tr>
</table></td></tr>
<tr><td>○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2024. 12. 31.</td><td>○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 2025. 12. 31. (정진욱의원안)
- 2026. 12. 31. (김상훈의원안)
- 2027. 12. 31. (박성훈의원안, 박수민의원안, 정부안, 허성무의원안, 정태호의원안, 신영대의원안)
- 2028. 12. 31. (조지연의원안, 박지혜의원안)
- 2029. 12. 31. (김종양의원안)
- 2030. 12. 31. (이상식의원안, 박충권의원안, 김영진의원안, 정성호의원안(1951))
- 2034. 12. 31. (김성원의원안, 김태년의원안, 박수영의원안, 이병진의원안(2125), 정성호의원안(4780))
- 2039 12. 31. (천하람의원안)</td></tr>
</table>

* 박충권의원안 2024. 5. 31. 발의(의안번호 67), 김성원의원안 2024. 6. 18. 발의(의안번호

578), 이상식의원안 2024. 7. 1. 발의(의안번호 1233), 김태년의원안 2024. 7. 3. 발의(의안번호 1361), 김종양의원안 2024. 7. 5. 발의(의안번호 1431), 김상훈의원안 2024. 7. 8. 발의(의안번호 1457), 박수영의원안 2024. 7. 8. 발의(의안번호 1484), 김영진의원안 2024. 7. 9. 발의(의안번호 1526), 정성호의원안 2024. 7. 18. 발의(의안번호 1951), 조지연의원안 2024. 7. 19. 발의(의안번호 1980), 이병진의원안 2024. 7. 23. 발의(의안번호 2125), 이병진의원안 2024. 7. 24. 발의(의안번호 2173), 박성훈의원안 2024. 8. 1. 발의(의안번호 2466), 정진욱의원안 2024. 8. 20. 발의(의안번호 3009), 박수민의원안 2024. 8. 29. 발의(의안번호 3391), 정부안 2024. 9. 2. 제출(의안번호 3522), 박지혜의원안 2024. 9. 5. 발의(의안번호 3721), 정성호의원안 2024. 10. 18. 발의(의안번호 4780), 허성무의원안 2024. 10. 22. 발의(의안번호 4825), 천하람의원안 2024. 10. 28. 발의(의안번호 4944), 정태호의원안 2024. 10. 28. 발의(의안번호 4975), 신영대의원안 2024. 10. 28. 발의(의안번호 4983)

□ 개정안은 신성장·원천기술사업화시설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율을 상향하고,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을 상향하며 적용기한(2024년 말)을 연장하려는 것임.

공제율 상향과 관련하여 이상식의원안·정성호의원안(의안번호 1951)은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추가공제율을 6%p(4%→10%) 상향하려는 것이고, 박수영의원안은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기본공제율을 10%p(대·중견 15%→25%, 중소 25%→35%) 상향하려는 것이며, 이병진의원안(의안번호 2173)은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기본공제율을 15%p(대·중견 15%→30%, 중소 25%→40%) 상향하려는 것이고, 신영대의원안은 신성장·원천기술사업화시설 기본공제율을 상향(대 3%→15%, 중견 6%→20%, 중소 12%→25%)하고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기본공제율을 상향(대·중견 15%→25%, 중소 25%→30%)하려는 것임.

적용기한 연장과 관련하여 정진욱의원안은 2025년까지 1년 연장하고, 김상훈의원안은 2026년까지 2년 연장하며, 박성훈의원안·박수민의원안·정부안·허성무의원안·정태호의원안·신영대의원안은 2027년

까지 3년 연장하고, 조지연의원안·박지혜의원안은 2028년 말까지 4년 연장하며, 김종양의원안은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하고, 이상식의원안·박충권의원안·김영진의원안·정성호의원안(의안번호 1951)은 2030년 말까지 6년 연장하고, 김성원의원안·김태년의원안·박수영의원안·이병진의원안(의안번호 2125)·정성호의원안(의안번호 4780)은 2034년 말까지 10년 연장하며, 천하람의원안은 2039년 말까지 15년 연장하려는 것임.

[적용기한 연장 관련 개정안 요약]

적용기한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2034년	2039년
개정안	정진욱 의원안	김상훈 의원안	박성훈 의원안, 박수민 의원안, 정부안, 허성무 의원안, 정태호 의원안, 신영대 의원안	조지연 의원안, 박지혜 의원안	김종양 의원안	이상식 의원안, 박충권 의원안, 김영진 의원안, 정성호 의원안 (의안번호 1951)	김성원 의원안, 김태년 의원안, 박수영 의원안, 이병진 의원안, 정성호 의원안 (의안번호 4780)	천하람 의원안

□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될 수 있음.

첫째,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에 중요한 국가전략기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이에 대한 설비투자를 활성화함으로써, 개별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수행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동 제도가 시

행되지 않았다고 가정할 때,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대해 2022년에는 0.51배의 투자를 진행했을 것이고 2023년에는 0.54배의 투자를 진행했을 것이라고 응답결과가 나타났음.[7)]

즉, 동 제도가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둘째, 국가 간 기술 패권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각국들 역시 선제적으로 기술우위를 점하기 위해 자국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을 늘려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투자를 이어나갈 발판을 마련함으로써 국내기업의 대외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음.

[주요국의 전략산업 지원현황]

구분	지원내용
미국	반도체 시설·장비 투자액의 25%를 세액공제(CHIPS Act)
대만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해 5% 세액공제
EU	'30년까지 민간투자에 430억€를 지원하는 인센티브 제도 도입(The European Chips Act)
일본	반도체 설비투자액의 최대 50%까지 세제지원(경제안전보장추진법)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조세지출 평가서

셋째, 신성장·원천기술사업화시설에 대한 공제율을 상향하면 신성장·원천기술사업화시설에 대한 기업의 투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음.

「2024년 조세특례 심층평가」에 따르면, 신성장 원천기술 사업화

7)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4 조세특례 심층평가(3): 통합투자세액공제」, 2024. 9.

시설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의 도입 이후 동 제도를 많이 사용하는 산업들에서 총자산의 성장률이 기타 산업들에 비해 3.3~3.4%p 더 높았던 것으로 관찰되었음.

□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기업의 투자결정은 세제지원 외에도 기업의 현금보유수준, 사업리스크, 부채비율, 대내외 경영환경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제율 상향이 투자 확대로 이어질지 확신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둘째,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고용성장률에 대한 계수가 대체적으로 양(+)의 값을 가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8] 동 제도의 고용창출효과는 불분명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셋째,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율 상향에 따른 세수감소 효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을 10년 연장하는 경우, 2026년 4,821억원, 2035년 6,292억원 등 2026년부터 2035년까지 세수가 10년간 연평균 5,528억원(총 5조 5,275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9]

8)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4 조세특례 심층평가(3): 통합투자세액공제」, 2024. 9.

9) 이병진의원안(의안번호 2125)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단위: 억원)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 적용기한 10년 연장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4,821	-4,965	-5,115	-5,268	-5,427	-5,590
	2032	2033	2034	2035	누적	연평균
	-5,758	-5,931	-6,109	-6,292	-55,275	-5,528

주) 세수효과는 통합투자세액공제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과세(감면액의 20%)를 고려한 값임
자료: 예산정책처

넷째, 일반시설, 신성장·원천기술사업화시설,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간 공제율이 차등화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신성장·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의 기술범주를 적정하게 선정하지 못하는 경우 기업의 투자 결정을 왜곡하여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저해될 가능성도 있음.

라. 국가전략기술에 새로운 분야 추가 등

현 행	개정안
□ 기업의 R&D 및 통합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10조, 제24조, 제130조)	□ 기업의 R&D 및 통합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10조, 제24조, 제130조)
○ 국가전략기술 범위(제10조) -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바이오의약품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와 관련된 기술	○ 국가전략기술 범위(제10조) - 인공지능, 클라우드컴퓨팅 추가 (김태년의원안, 최민희의원안) - 인공지능 추가 (이인선·조승래의원안, 안도걸의원안, 천하람의원안, 신영대의원안) - 방위산업 추가(김종양의원안) - 방위산업, 인공지능 추가(정성호의원안(2063), 정태호의원안) -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탄소중립산업 추가(김영진의원안) - 태양광, 풍력 추가(박지혜의원안) - 원자력 추가(박성훈의원안) - 미래형운송수단 추가(박수민의원안) - 미래형 이동수단에 미래형 선박 포함 명확화 (허성무의원안)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배제(제130조)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배제(제130조) - 인공지능기술 사업화시설의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배제조항의 예외 적용(정성호의원안(4568))

* 김태년의원안 2024. 7. 3. 발의(의안번호 1361) 김영진의원안 2024. 7. 9. 발의(의안번호 1526), 김종양의원안 2024. 7. 11. 발의(의안번호 1644), 이인선·조승래의원안 2024. 7. 19. 발의(의안번호 2012) 정성호의원안 2024. 7. 22. 발의(의안번호 2063), 박성훈의원안 2024. 8. 1. 발의(의안번호 2466), 박수민의원안 2024. 8. 29. 발의(의안번호 3391), 최민희의원안 2024. 9. 5. 발의(의안번호 3697), 박지혜의원안 2024. 9. 5. 발의(의안번호 3721), 정성호의원안 2024. 10. 4. 발의(의안번호 4568), 허성무의원안 2024. 10. 22. 발의(의안번호 4825), 안도걸의원안 2024. 10. 25. 발의(의안번호 4923), 천하람의원안 2024. 10. 28. 발의(의안번호 4944), 신영대의원안 2024. 10. 28. 발의(의안번호 4983), 정태호의원안 2024. 10. 28. 발의(의안번호 4975)

(1) 미래형 선박 및 미래형 운송수단 추가 (박수민의원안, 허성무 의원안)

□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에 미래형 선박 및 미래형 운송수단을 추가하려는 것임.

박수민의원안은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되는 분야를 '미래형 이동수단'에서 '미래형 운송 및 이동수단'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허성무의원안은 '미래형 이동수단'에 미래형 선박이 포함됨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 2023년 4월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미래형 이동수단이 추가되었음.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되는 세부기술을 규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관련 기술을 주행상황 인지 센서 기술, 주행지능정보처리 통합시스템 기술, 주행상황 인지 기반 통합제어 시스템 기술, 전기동력 자동차의 구동시스템 고효율화 기술, 전기동력 자동차의 전력변환 및 충전 시스템 기술로 규정하여 지원대상 기술을 개인 육상 이동 수단인 자동차에 한정하고 있음.

한편, 2023년 4월에 제정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은 '모빌리티 수단'을 ①사람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데에 이용되는 자전거·자동차·열차·항공기 및 선박, ②보행(步行) 등 비동력 교통수단, ③자율주행자동차, 도심항공교통 등 첨단기술이

접목된 이동수단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첨단 모빌리티'를 첨단 기술이 접목되어 기존 교통체계의 운행·제공·설치·운영 방식이나 형태 등과 차별성이 인정되는 모빌리티 수단·기반시설·서비스 및 기술로 정의하고 있음.[10)]

□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될 수 있음.

첫째, 자동차뿐만 아니라 육상·해상·항공 등 다양한 모빌리티 수단에 대한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폭넓게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기후변화가 심화되어 글로벌 환경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에너지 효율적인 친환경 교통수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10)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빌리티"란 사람 또는 물건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거나 운송하는 행위, 기능 또는 과정으로서 이와 관련한 수단, 기반시설 및 일련의 서비스를 통하여 확보할 수 있는 수요자 관점을 고려한 포괄적 이동성을 말한다.
2. "모빌리티 수단"이란 모빌리티에 이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교통수단
   나. 보행(步行) 등 비동력 교통수단
   다. 자율주행자동차, 도심항공교통 등 첨단기술이 접목된 이동수단
3. "모빌리티 기반시설"이란 모빌리티 수단의 운행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교통시설
   나. 첨단기술이 접목된 모빌리티 수단의 운행에 필요한 시설
   다. 가목 및 나목의 시설에 부속되거나 모빌리티 수단의 원활한 운행을 보조하는 유형·무형의 시스템(전산 시스템을 포함한다)
4. "모빌리티 서비스"란 모빌리티 수단·기반시설을 이용하여 사람 또는 물건을 직접 이동하거나 타인이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는 이를 위하여 모빌리티 수단·기반시설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5. "모빌리티 혁신"이란 모빌리티에 자율주행, 인공지능,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을 결합하고 교통수단 간 연계성을 강화하여 수요자 관점에서 이동성을 증진하는 것을 말한다.
6. "모빌리티 활성화"란 모빌리티 수단의 운행 및 서비스 제공, 이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개발·설치·운영 및 모빌리티 수단과 기반시설을 연계한 각종 모빌리티 서비스 구현 등 모빌리티 혁신을 일상화하는 것을 말한다.
7. "첨단모빌리티"란 첨단기술이 접목되어 기존 교통체계의 운행·제공·설치·운영 방식이나 형태 등과 차별성이 인정되는 모빌리티 수단·기반시설·서비스 및 기술을 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2년 10월 '12대 국가전략기술'[11]을 선정했는데, '첨단 모빌리티'가 포함되어 있으며, 세부 중점기술로는 '자율주행시스템', '도심항공교통', '전기·수소차'가 있음.

2022년 기준 주요 5개국(우리나라, 미국, 중국, 일본, EU) 중 우리나라의 첨단모빌리티 기술 수준은 84.2로서, 5개국 중 5위이며 1위인 미국과 2.1년의 기술격차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12]

또한, 미래형 운송수단의 한 분야인 첨단 해양모빌리티[13]의 주요 기술로는 친환경 선박, 자율운항선박, 첨단 해양교통 플랫폼, 해양 위치·항법·시각(PNT) 정보 등이 있음.

국제해사기구(IMO)는 2050년까지 국제해운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2023년 7월에 설정하는 등 선박의 친환경화가 빠르게 진행 중인데,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첨단 해양모빌리티 시장점유율은 1%로 저조한 수준임.

이와 같이 자동차 외에도 다양한 첨단 모빌리티의 기술혁신이 진행되고 있는데, 미래형 운송수단을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추가하여 개인용 비행체(PAV), 도심항공이동수단(UAM)과 친환경・초고속 운송수단인 수소 트럭, 하이퍼루프, 친환경・자율운항 선박 등 다양한 첨단 기술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음.

둘째, 미래형 선박에 대한 R&D 및 설비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우

11) '12대 국가전략기술'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과 범위가 상이함.

12)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22년 기술수준평가', 2024. 2.

13) 탈탄소·디지털 등 첨단 융·복합 기술이 적용되어 해상에서 사람·재화를 이동(수송)시키는 수단(선박 등), 해상교통환경 및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의미함.

리나라 조선산업 수출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음.

우리나라의 조선산업의 수출은 2012년 이후 감소추세에 있으며, 2024년 수출액은 156.4억 달러를 기록하여 2017년 421.8억 달러 대비 50% 이상 감소하였음.

[우리나라 조선산업 수출 현황]

(단위: 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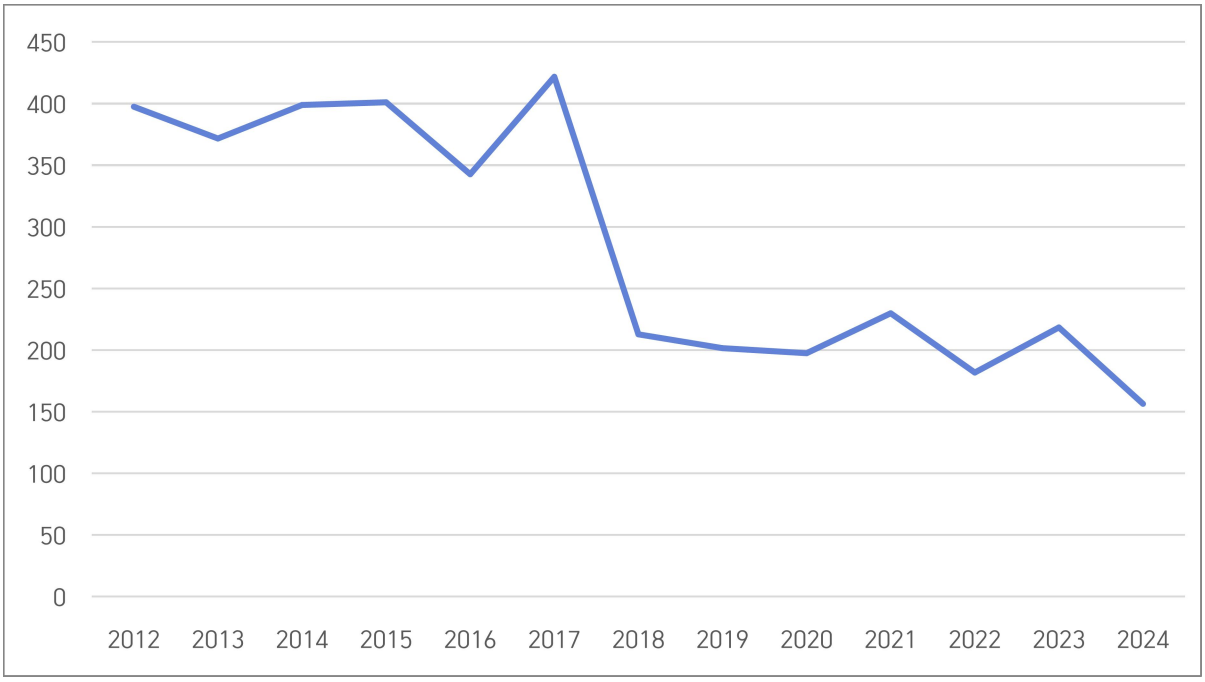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협회

또한, 2023년 전 세계 건조량에서 중국의 선박 건조량, 신규 수주량, 건조 잔량은 재화중량톤수(DWT) 기준으로 세계 전체의 50.2%, 66.6%, 55.0%를 차지한 반면, 우리나라는 27.2%, 18.5&, 26.3%를 차지하는 것에 그쳤음.

그런데 친환경・디지털・스마트 3대 분야에서 우리 조선산업이 확보해야 할 수소 엔진·풍력보조추진·가상 훈련·무인 안전운항 시스

템 등 100대 코어 기술에서 주요 선도국 대비 약 1.7년의 기술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추후 우리나라 조선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음.[14)]

[100대 코어 기술의 분야별 기술격차]

분야	친환경	디지털	스마트
기술격차	EU 대비 2.2년	미국 대비 1.2년	EU 대비 1.6년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K-조선 100대 초격차 기술 확보에 민관 맞손', 2024. 7. 2.

주요 기술에서 기술격차가 확대되면 조선업의 친환경·디지털 전환에서 우리나라 조선업 수출이 더욱 축소되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데, 미래형 선박 R&D 및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통해 기술경쟁력 제고와 수출의 확대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셋째, 다른 주요국들도 미래형 운송수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모빌리티 트렌드 전환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음.

중국은 2021년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교통 강국 건설 가속화에 관한 로드맵'을 발표하여 ①차세대 철도운송, 신에너지 및 지능형 연결차량, 첨단 선박 등에 대한 발전가속화 및 신규장비 개발, ②초고속 열차, 초고속 항공기 등 신형 모빌리티 연구개발 수행과 해저 현수터널의 이론체계 및 핵심기술 개발, ③새로운 지능형 운송시스템 및 자율주행 촉진 지능형 운송 등의 적용 가속화 등을 목표로

14)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K-조선 100대 초격차 기술 확보에 민관 맞손', 2024. 7. 2.

제시하고 있음.

또한, EU는 '지속가능한 스마트 모빌리티 전략'을 2020년에 발표하여 ①전기차 투자 확대 및 상업용·버스·대형차량 등의 본격적인 탈탄소화, ②항공 및 해상분야의 탈탄소화 확대, ③상업용 드론, 자율주행차, 하이퍼루프, 수소항공기, 전기 수상 운송 등 더 많은 미래형 모빌리티 개발에 대한 계획을 제시하고 있음.[15)]

이와 같이 각국에서 미래 모빌리티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데, 미래형 운송수단에 대한 R&D 및 투자의 강화는 변화하는 산업환경에 대응하여 관련 우리나라 기업의 적응력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일부 미래형 운송수단 관련 기술이 현행 신성장·원천기술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신성장·원천기술 내 미래형 운송수단 분야가 별도로 있지는 않으나 여러 분야에 걸쳐 미래형 운송수단 관련 기술이 포함되어 있음.

예를 들어, ①에너지・환경 분야 내 차세대 배기가스 규제 대응을 위한 운송・저장시스템 기술. ②항공・우주 분야 내 무인기 지능형 자율비행 제어 시스템 기술, 물류 배송용 드론 제조기술, ③탄소중립 분야 내 선박용 디젤엔진 제조 기술, 암모니아 추진선박의 연료 공급 및 후처리 기술, 연료전지, 배터리 및 축발전기 모터를 적용

15) 한국교통연구원, '미래형 교통수단 기술개발 기획 최종보고서', 2022. 4.

한 선박 발전시스템 등이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원되고 있음.

둘째, 개정안과 같이 미래형 선박 및 미래형 운송수단을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하여 지원하는 것은 제한된 재정자원 하에서 전략적인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라 우선적 투자대상을 결정하는 문제이므로 해당 기술의 전략적 가치 및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임.

(2) 종합 검토의견

□ 국가전략기술에 특정 기술분야를 추가하는 개정안은 국가안보와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소수의 핵심기술에 대해 집중적인 지원을 한다는 국가전략기술의 도입취지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국가전략기술에 더 많은 기술 분야를 추가할수록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기업의 투자가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주요 산업들의 경쟁력을 높임으로써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을 다변화할 수 있음.

□ 다만,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한정된 재정자원 하에서 보다 다양한 기술분야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여 추가적인 세제지원을 할수록, 기업의 R&D 및 시설투자에 대한 지원이 분산되어 일부 기술을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소수의 핵심 산업을 육성하려는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지원 제도의 당초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음.

둘째, 국가전략기술 분야가 확대될수록 상향된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 기업의 R&D 지출 및 시설투자 비율이 높아져 세수감소 규모가 커질 수 있음.

셋째,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되는 기술분야가 확대될수록 더 많은 산업에서 세제혜택의 확대 요구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국가전략기술의 범위가 늘어날수록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되는 기술분야와 유사한 기술분야의 범위도 함께 늘어나기 때문에 각 산업이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국가전략기술 지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음.

문 의 처
02)6788-5155